보관한다.

- * 학생은 학교의 결정 사항에 대해 알리는 서면 답변을 받을 것이다.
- * 학생의 입학 연기 또는 휴학으로 인해 학생 비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, DHA 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정보가 학생에게 통보된다.
- * 시드니신학대학과 소속 교육기관은 학생의 등록이 연기되거나 일시적으로 휴학하는 것에 대하여 PRISMS 를 통해 DHA 에 통보할 것이다.
- * 학생의 요청과 대학의 답변이 기록될 것이다.

2. 학생의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정, 승인 및 보고

학생이나 대학이 주도하여 학생의 등록 취소를 시작할 수 있다.

시드니 신학 대학 및 그 소속 교육 기관은 학업 부정 행위 (표절, 부정 행위를 포함 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), 사기, 부적절한 행동, 허위 진술, 비 윤리적인 행동 등, 을 수행하거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나 절차 진행 요구 사항을 위반할 경우, 유학생의 비행에 근거하여 학생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. 관련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증거가 입증되어야 하며, 학생의 파일에 문서가 보관되어야 한다. 대학에 의해 취소된 학생은 다음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받게 된다.

- 학생의 등록을 취소하는 대학의 결정내용.
- 학생에게 SCD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대학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 (국가 코드 2018 의 표준 9 에 부합됨).
- 학생에게 불만 및 항소 절차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근무일 기준 20 일이 있음을 알리고 항소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절차.
- 학생이 취소를 주도한 경우, 학생의 등록 취소가 학생 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생이 주도한 취소/연기/휴학 후 14 일 이내에 PRISMS 를 통해 DHA 에 통보될 것임을 통보한다.
- 20 일의 근무일이 경과되고, 학생이 불만 사항 및 항소 절차를 하지 않거나, 철회했거나 과정이 완료되어서 대학의 초기 결정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리는 결과가 발생하면 시드니신학대학과 관련 교육 기관은 PRISMS 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학생의 등록 취소를 DHA 에 알려야 한다.
- 취소는 학생의 복지와 관련하여 정상참작 상황이 적용되는 20 일이 지나기 전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.
- 학생 또는 대학의 취소 및 대학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대학 기록에 보관된다.

이의 제기 절차들

1. 이의제기(appeals) - 수업 과정 학생들 (coursework students)

어떤 학생이 평가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고 믿거나, 또는 부여된 학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평가 항목이든지 그 주어진 학점에 반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 우선 그 학생은 관련된 교수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. 이러한 비공식적 대화 후에도 여전히 이의제기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학생은 자기가 속한 회원 학교의 학술 위원회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 낙제한 최종 점수와 관련해서 회원 학교에서의 재검토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은 본부의 학술 위원회에

-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. 아래의 근거에 한하여 학술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- 이의제기는 회원 학교로부터 온 이의제기에 대한 확정된 결과를 수령한지 평일 십일 안에 학장에게 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;
- 그 학생은 학장에게 재검토와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들이 회원 학교에 의해 준수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문서로 제시해야 한다;
- 학술 위원회는 그 이의제기를 재량 것 다룰 것이다;
- 학술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 될 것이다.

2. 이의제기 - 연구 학위 지원자 (research candidate)

연구 학위 지원자들은 학술 위원회의 다음의 결정에 반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- 지원한 과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.
- 학위를 수여하지 않겠다는 결정.
 재-제출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정. 지원자는 다음의 근거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- 과정 상의 변칙
- 편견 또는 선입관의 증거.

연구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은 다음의 원칙을 따라 운영될 것이다.

- 지원자는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위에 언급된 결정을 통보 받은 지 30일 안에 학교의 학장에게 문서로 이의제기를 통보할 것이다.
- 이의제기를 받으면 학장은 그 문제를 상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.
- 학생에게 불만 및 항소
 - (1) 공식적인 이의제기 통보를 받으면 상임위원회는 즉석으로 '연구 대학원 이의제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의 일들을 진행할 것이다.
 - (i) 본부 위원회의 회원인 독립 의장,
 - (ii) 학술 위원회의 의장
 - (iii) 대학의 학장
 - (iv) 대학원 학생
 - (2) 학술 위원회의 아래의 결정에 불복하는 연구 학위 지원자가 제기한 이의를 확정하고 본부 위원회에 보고한다.
 - (i) 지원 과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
 - (ii) 학위를 수여하지 않겠다는 결정
 - (iii) 재-제출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정
- (3) 이의제기 위원회(the Appeal Committee)는 임명된 후 21일 안에 모여야 한다.
- (4) 이의제기자는 이의제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자료라도 이의제기 위원회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.

학생에게 불만 및 항소

• 이의제기 위원회(the Appeal Committee)는 임명된 후 21일 안에 모여야 한다.

- 이의제기자는 이의제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자료라도 이의제기 위원회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.
- 이의제기자는 또한 다음의 경우에 위원회 앞에 출석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이의제기자는 자기를 지원해줄 기능을 가진 조언자를 동반할 수 있다;
- 그 조언자가 변호나 대리자로서 행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:
- 이의제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, 본부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될 것이다.

STUDENT GRIEVANCE POLICY AND PROCEDURE 학생 불평 해소 규정 및 절차

목적과 범위

시드니 신학대학(이하 SCD)은 학문 연구 및 개인 개발에 도움이 되는 조화로우며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학교의 비젼과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. SCD 는 학생들이 차별과 괴롭힘, 욕설과 희생제물이 되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불공정함을 당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책임을 가집니다. SCD 는 학생들이 간혹 불이익이나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, 또한 불평사항이 관련자 모두에게 최소한의 스트레스와 최대한의 보호를 받으며 일관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대응되도록 보장하고 있다.

시드니 신학대학의 학생불평 해소 규정과 절차들은 학문적이거나 비 학문적인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종류의 상황이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공급하고 있다.

정의: '교육 기구'란 SCD 의 회원학교 및 한국신학부를 의미한다. 이 규정은 불평이 회원 학교의 단계에서부터 SCD 그 자체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. 학생 불평 해소 정책과 그 절차의 적절한 이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SCD 이사회에 있다.

SCD 의 학생 불평 해소 정책과 절차는 SCD 의 모든 학생들 및 교수진과 일반 직원들 모두에게 소통된다. 그것은 아래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.

- on the SCD website; SCD 웹사이트.
- in the SCD Handbook; SCD 핸드북.
- on each MI website; and 각 회원학교의 웹사이트.
- in each MI Handbook. 그리고, 각 회원 학교의 핸드북.

정의

'장'이란 회원 학교의 학장 혹은 본부 총장에 의해 위임된 한국신학부의 학장을 말한다.
'본부 총장실' 이란 SCD 본부 사무실을 말하며, SCD 관리의 주체이며, 본부 총장이 그 안에서 자리잡고 있다: 거기에는 코스웍, 리써치, 학생관리, 재정담당 디렉터와 다양한 지원하는 직원들이 있다. 디렉터 레벨의 직원 혹은 그 이상이 학생불평해소와 관계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.